



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 리 지 침

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

제 1 장 총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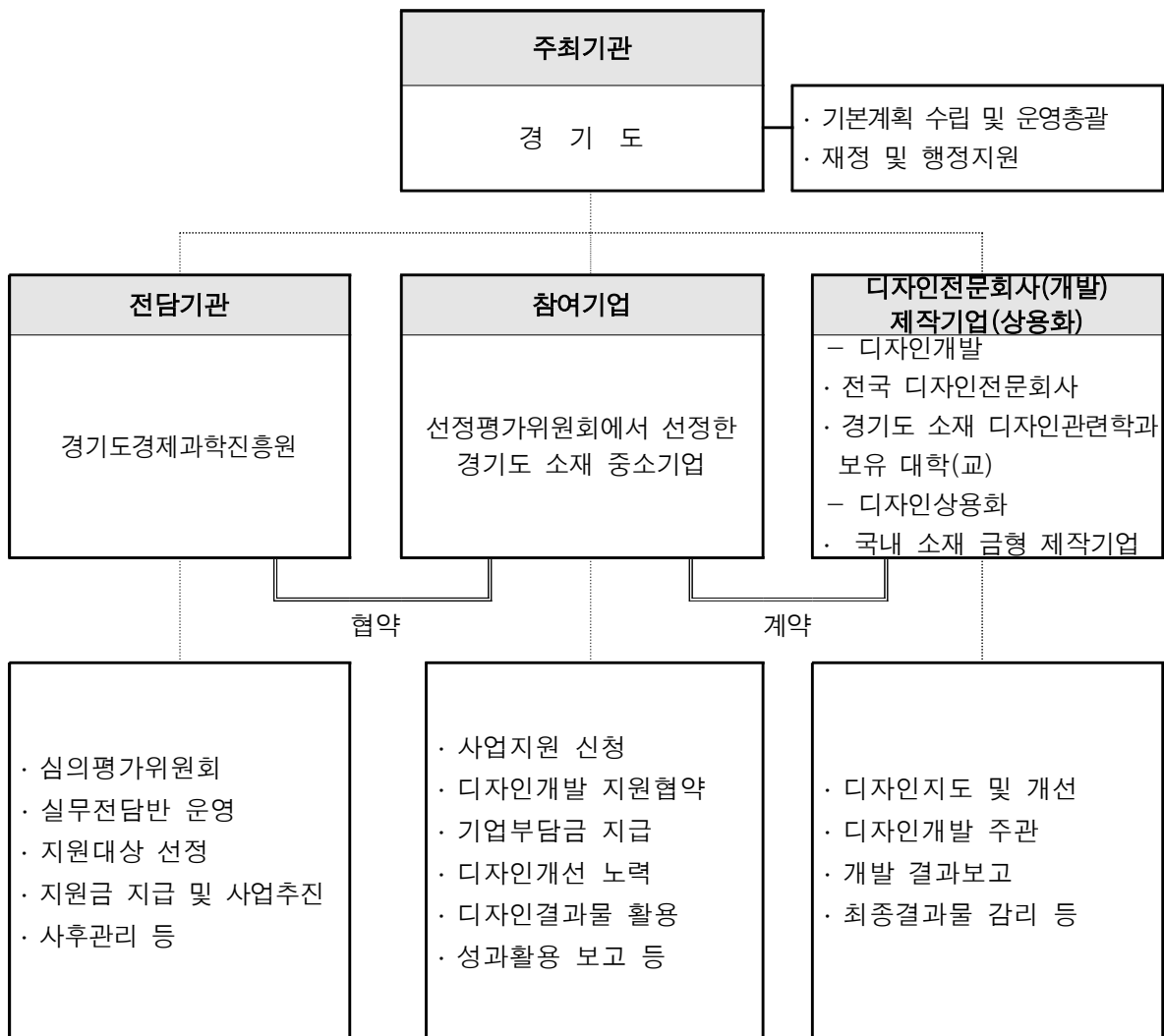
1. 목적

이 규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의 범위

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,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고 함)이 별도의 세부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. 사업추진체계



4. 사업추진절차

[디자인개발]

신청 및 평가	지원신청서 작성(신청기업)	•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(경기기업비서)
	↓	
	선정대상 평가	• 1차 서류평가 • 2차 발표평가 :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	↓	
	지원결정	• 선정결과 개별통보
	↓	
	용역계약 및 협약체결	• 용역 계약 (참여기업&제작기업), 협약 체결 (진흥원&참여기업&제작기업) 1차 사업비(기업부담금) 지급 (참여기업-디자인전문회사)
과제 진행	과제 수행 관리	• 중간 및 최종점검(필요시 진행)
지원금 지급	사업비 잔금 지급	• 2차 사업비(지원금 포함) 지급(참여기업→디자인전문회사) * 참여기업 지원금 수령시 해당
	↓	
	지원금신청서 제출 (신청기업→진흥원)	•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(지출증빙포함) 제출
	↓	
	지원금 지급	• 확인 후 지원금 지급 (진흥원-참여기업-디자인전문회사)

[디자인상용화]

신청 및 평가	지원신청서 작성(신청기업)	•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(경기기업비서)
	↓	
	신청서 접수	•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및 신청
	↓	
	선정대상 평가	• 1차 서류평가 • 2차 발표평가 : 선정평가위원회 개최
	↓	
	지원결정 및 원가분석	•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(금형)원가분석 실시 (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) • (금형)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
	↓	
	용역계약 및 협약체결	• 용역 계약 (참여기업&제작기업), 협약 체결 (진흥원&참여기업) 1차 사업비(기업부담금) 지급 (참여기업-제작기업)
과제 진행	과제 진도관리	•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
지원금 지급	비용 완납(신청기업)	•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,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(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)
	↓	
	지원금신청서 제출 (신청기업→진흥원)	•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(지출증빙포함) 제출
	↓	
	지원금 지급(진흥원→신청기업)	•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(금형확인 현장방문) 후 지원금 지급

5. 지원범위

가. 지원대상

[디자인개발]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한다.
- 제품디자인 지원과제인 경우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.
 - ※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된다.
 - 1) 공장등록증명원 : 공장면적 500m² 기준하여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필히 제출
 - 2) 건축물관리대장 :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소 기준으로 공장면적 500m² 미만일 경우 “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” 제62조의 10항(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)을 적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(시설)인 경우
 - 3) 입주계약서사본 : 참여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경기벤처창업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
 - 4)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(직접생산확인증 등) 제출이 가능한 경우

※ 제한사항(지원제외 대상)

-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할 경우
-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/ 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
- 사업비 과다책정 등 실사/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세금채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전년도 동 사업에 지원받은 경우
-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

[디자인상용화]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된,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한다.
- 최근 3년(22년~24년)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지원받은 동일 과제에 대한 금형 제작 지원만 가능함
-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(제품제작도면, 목업 등) 보유기업
- 2025년 10월 30일 이전 완료 가능한 기업에 한함

※ 제한사항(지원제외 대상)

-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할 경우
- 해외 제작기업 통한 진행 불가. 국내 제작기업에 한하여 제작 인정함
- 사업비 과다책정 등 실사/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
- 신청기업이 금형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세금채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신청기업은 금형제작기업과 직접진행·지급(금형제작기업이 타 금형제작기업에 하청금지)
-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
- 비용 지출 증빙 시 어음 형태 제출 불인정
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나. 지원내용

○ 디자인개발

분야	지원내용	결과물
제품디자인	제품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 2D, 3D 후보안 도출, 최종안 3D렌더링 제작, 시방서, 디자인목업 제작 등	1:1 Mock-up 권장 Scale Mock-up 개발 시 과제별 협의진행 (참여기업↔디자인전문회사) ※심사위원회 승인필요
시각디자인	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, CI 또는 BI 매뉴얼북(Basic + Application system) 등	CI 또는 BI 개발 후 Application System 과업내용으로 일부 추가개발가능 (과제별 협의필요)
포장디자인	디자인기획, 기초조사, 아이디어 도출, 지구조 연구,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 제작시방서, 패키지샘플 등	제작시방서(구조 및 형태, 재질 등의 사양서), 패키지샘플 제작 의무

○ 디자인상용화

분야	지원내용	결과물
금형	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(22~24년)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제작도면, Design Mock-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 제 금형제작지원(동일과제)	금형(프레스 금형, 플라스틱 금형, 초경금형, 분말야금 금형, 다이캐스팅 금형, 단조금형, 압출금형)

다. 분야별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

세부내용 (개발비 :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)				
지원단계	세부지원분야	지원비율	지원한도	개발기간
디자인개발	제품	개발비의 70%	1,400만원	90일 限
	시각·포장		700만원	70일 限
디자인상용화	금형		1,600만원	25.10.30일까지 완료

※ 디자인상용화(금형)의 경우,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

라. 수행기관 자격요건

- 디자인개발

-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同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**한국 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**
 ※ **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 함**
 ※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시 최대 7점 가점 부여 (경기도 소재 5점, 모집 해당 시군 소재 2점)
-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, 기술대학 등
 으로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(교)

- 디자인상용화

- 국내소재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된 제작기업을 선정해야함
ex : 금형 제작,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필수

※ 제한사항

- 국외 소재 제작 기업(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)
-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기업을 선정할수 없음
-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기업이 될 수 없음

6. 진흥원의 임무

- 가.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- 나. 심의평가위원회, 진단위원(지도위원)의 운영
- 다. 사업계획서의 접수·검토·조정 및 협약체결
- 라. 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및 개발사업비 환수
- 마. 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
- 바. 디자인전문회사의 지도·관리
- 사.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아.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7. 기타사항

- 가.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참여기업의 의견개선, 이의신청 등은 진흥원에 온·오프라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나.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추진절차는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에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선정 결과의 경우 기업별 개별 통보한다.

제 2 장 심의평가위원회, 진단위원의 구성·임무 및 운영

1. 심의평가위원회

- 가. 구분
 - 1) 심의평가위원회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'1차 서류평가' 및 '2차 선정평가위원회'로 구성된다.
- 나. 구성
 - 1) 진흥원의 장은 다음에 따라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.
 - 가) 1차 서류평가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담당한다.

- 나)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, 각 분야는 제품, 시각, 환경, 멀티미디어 등 디자인 제분야와 마케팅, 시장성평가, 에코디자인, 디자인경영 등 디자인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 진흥원의 장은 필요시 임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다)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 심의평가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- 라)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인력풀에서 감사실 추천을 통해, 5인 이내를 선정하여 개최한다.
- 마)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, 필요시 진흥원 내부위원(경기도, 참여시군 소속 공무원 포함) 2명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- 바)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간사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로 한다.

다. 운영

- 1) 1차 서류평가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한다.
- 2)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기업에서 사전 제출한 디자인개발지원계획서를 검토 및 조정을 한다. 단, 필요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- 3)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는 해당 권역의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개발대상 과제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 심의평가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4)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기준 등을 심의평가위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.
- 5) 진흥원 원장은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미리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에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6) 2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디자인전문회사의 총괄책임자(디자인 진단)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- 7) 2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시군별로 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단, 기업별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, 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- 8) 2차 선정평가위원은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·평가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채점표를 작성한다.
- 9) 동 사업 관련자는 개발사업 심사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라.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

[디자인개발]

- 1) 1차 서류평가

구분	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결과구분
1차 서류 평가	•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(40점)	- 사업계획의 적정성(20) -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(10) - 관련분야 파급 효과(10)	▶평가점수 60점이상 : 선정 단,대상자가 5배수 이상인 경우 고득점순으로 조정가능 ▶평가점수 60점미만 : 탈락
	• 재무의 건전성(30점)	- 영업이익율(10) • (영업이익/매출액)×100 - 매출액(10) •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서 - 유동비율(10) • 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	
	• 기업 역량(30점)	- 업력(10) - 4대보험 상 상시종업원수(10) - 기술성(10) •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(5) • 해외규격,신기술마크,품질인증 등(5)	
	• 가산점(최대10점)	- 지원수혜빈도 • 최근 2년간 수혜여부(미지원2점, 기지원0점) - 기업인증(10) • 경기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경기일자리우수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ESG진단평가 우수기업, 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, RE100 인증 기업 • 공장등록기업 (시각·포장 디자인분야에 한함)	

※ 가산점 기준

우대지원 대상		가점	비고
참여기업 가점사항 (최대10점)	최근 2년간 수혜여부	미지원(2점) 기지원(0점)	1차 서류평가 반영
	경기 유망중소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벤처기업 지정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이노비즈 지정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수출유망중소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사회적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여성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ESG진단평가 우수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RE100 인증 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공장등록기업 (시각·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) ※ 해당 참여시군 소재	2점	

2) 2차 선정평가·발표평가 (디자인개발 분야)

구분	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결과구분
2차 선정 평가 (발표 평가)	•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긴급성(30)	- 디자인개발의 필요성(10) - 시장환경분석 및 유통판매전략의 타당성 및 준비성(10) - 새로운 사업(전략, 아이템, 서비스 등) 시행성공 여부(10)	▶평가점수 60점이상 : 선정 ▶평가점수 60점미만 : 탈락
	• 상품의 혁신성(20)	- 상품(또는 기술)의 경쟁력(10) - 상품(또는 기술)의 혁신성 및 차별성(10)	
	• 상품의 경쟁력(30)	- 지원결과의 새로운 시장 진출성공 여부(10) - 지원결과의 매출증대 여부(10) - 지원결과의 시장점유율 증가 여부(10)	
	• 기대효과(20)	-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여부(10) - 활용가능성(사업화, 시장성 등)(10)	
	• 가산점(7) - 경기도 소재(5) - 해당 시군 소재(2)	-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(7) • 해당 시군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2점 추가로 최대 7점 가점 부여(예: 수원시 기업+수원시 디자인전문회사)	

[디자인상용화]

1) 1차 서류평가

구분	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결과구분
1차 서류 평가	•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(40점)	- 사업계획의 적정성(20) - 금형 제작 필요성 및 명확성(10) - 관련분야 파급 효과(10)	▶평가점수 60점이상 : 선정 단,대상자가 5배수 이상인 경우 고득점순으로 조정가능 ▶평가점수 60점미만 : 탈락
	• 재무의 건전성(30점)	- 영업이익율(10) • (영업이익/매출액)×100 - 매출액(10) •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서 - 유동비율(10) • 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	
	• 기업 역량(30점)	- 업력(10) - 4대보험 상 상시종업원수(10) - 기술성(10) •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(5) • 해외규격, 신기술마크, 품질인증 등(5)	
	• 가산점 (최대10점)	- 기업인증(10) • 경기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경기일자리우수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ESG진단평가 우수기업, 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, RE100 인증 기업	

※ 가산점 기준

우대지원 대상		가점	비고
참여기업 가점사항 (최대10점)	경기 유망중소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1차 서류평가 반영
	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벤처기업 지정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이노비즈 지정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수출유망중소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사회적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여성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ESG진단평가 우수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	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
RE100 인증 기업 ※ 유효기간 內	2점		

2) 2차 선정평가·발표평가 (디자인상용화 분야)

구분	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결과구분
2차 선정 평가 (발표 평가)	•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(30)	-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(10) - 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추진목표의 적절성(10) -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(10)	▶평가점수 60점이상 : 선정 ▶평가점수 60점미만 : 탈락
	• 추진능력 및 전문성(20)	-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(10) - 신청과제와 제작기업의 전문성 일치(10)	
	• 사업화 가능성(30)	- 개발 제품 상품과 계획 적정성(10) - 목표한 성과의 실현 가능성(10) - 예상 수요 및 시장 진출 가능성(10)	
	• 기대효과(20)	-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(10) -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(10)	
	• 가산점(2)	-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(2)	

제 3 장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심의·평가

1. 공시 및 신청서류 접수

- 가. 사업시행은 경기 기업비서(www.egbiz.or.kr)를 통해 공시한다.
- 나.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기기업비서(www.egbiz.or.kr)를 통해 신청·제출하여야 한다.

2. 디자인개발지원계획서의 심의·평가

- 가. 진흥원에 신청된 신청서는 디자인개발지원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제출서류, 신청자격, 기지원 여부, 참여제한, 재무구조, 기술성, 가점여부 등 1차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, 신청내용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단, 신청서의 모든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.
- 다. 진흥원 원장은 1차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2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·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- 라. 진흥원 원장은 심의·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결과를 기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.
- 마.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제외한 참여시군 및 지원분야별 2개 내외의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결정 기업의 지원포기 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.

제 4 장 협약체결·변경 및 해약

1. 협약체결

- 가.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은 선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흥원 원장과 디자인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, 디자인개발기간은 진흥원이 지정한 개발기간에 준용하여 산정해야 한다. 단, 기업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한다.

2. 협약내용 변경

- 가.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는 협약내용의 변경사항 중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 및 참여기업의 총괄책임자 변경, 개발목표 변경, 개발기간연장, 기타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 주소,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은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미통보에 따른 결과는 진흥원에서 결정하는 데로 따른다.
- 나.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는 협약내용 변경시 협약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<변경 요청시 관련제출 서류>

변경내용	제출서류
공통 제출서류	• 서식·협약 변경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
총괄책임자 변경	•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
개발목표 변경	• 개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
개발기간 연장	• 변경내역 제출

3. 협약의 해약

- 가. 진흥원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- 1)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)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 또는 참여기업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
 - 4) 기타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5) 디자인산업 정책상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- 6) 협약기간내 신청시군이 아닌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(디자인개발)
협약기간내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(디자인상용화)
 - 7)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
- 나.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진흥원은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, 참여기업, 참여기업의 대표,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.

제 5 장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지급

1. 업체부담금 계상

- 가. 선정평가위원회 심의·평가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총개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업체부담금(부가세를 제외한 총개발비의 30%이상)을 현금으로 계상하되 초과하는 금액 및 총 개발비용(지원금 포함)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지급하여야 한다.
- 나. 참여기업의 부담금 형태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2. 지원금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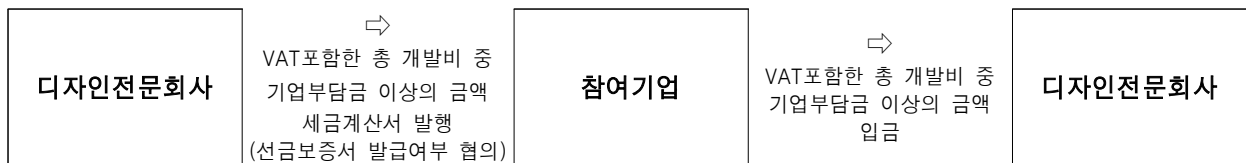
[디자인개발]

- 가.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후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디자인전문회사 사업계좌로 입금하고, 참여기업·디자인전문회사는 진흥원과 협약 체결한다. 다만, 참여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자인전문회사에 선금비용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디자인전문회사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납부 방법으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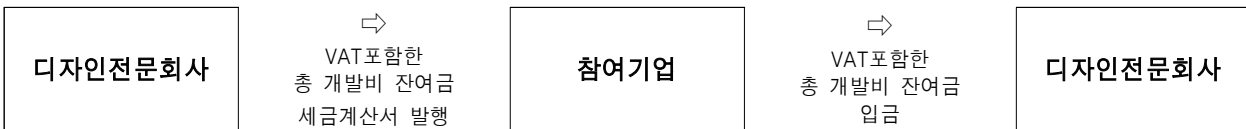
- 나.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내 관할 시·군 외 도내 타 시·군으로 이전하는 경우, '도 지원금'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- 다.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디자인전문회사, 참여기업에 지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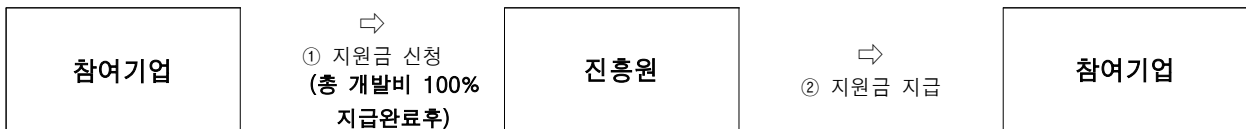
1) (공통)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(지원 대상 선정 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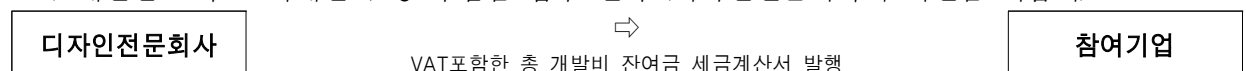
2-1)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(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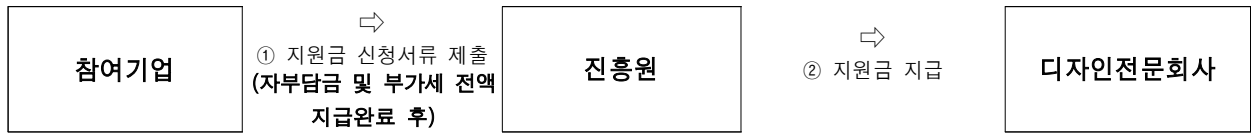
2-2) 지원금 지급절차(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)



3-1)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(디자인전문회사에 지원금 지급시)



3-2) 지원금 지급절차(디자인전문회사에 지원금 지급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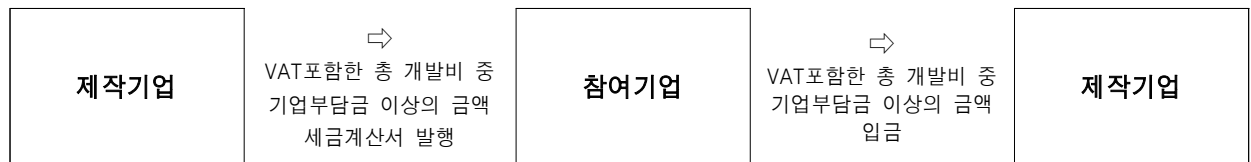
[디자인상용화]

가.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제작기업과 용역계약 체결 후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작기업 사업계좌로 입금하고, 참여기업·제작기업은 진흥원과 협약 체결한다. 다만, 참여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작기업에 선금비용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작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납부 방법으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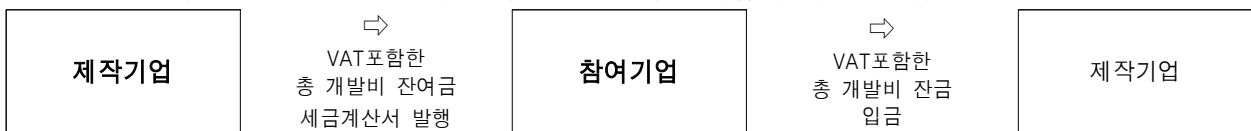
나.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내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,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함.

다.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참여기업에 지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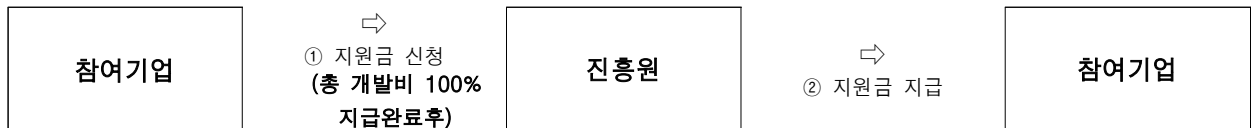
1) (공통)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(지원 대상 선정 후)



2)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(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)



3) 지원금 지급절차



제 6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보고

1.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보고

- 가.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는 개발 완료기한 이내에 관련 서식에 준하여 결과보고서·개발결과의 요약본 및 관련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이 공동으로 별도의 개발결과보고 연장신청서를 1회에 한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진흥원 승인을 통해 일부 조절할 수 있다.
- 나.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“중단” 또는 “실패”로 간주하고 지원금을 미지급 할 수 있다.
- 다. 진흥원은 당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현황,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라. “개발결과물”이라 함은 제1장에서 규정한 디자인분야별 결과물이며, 다만 시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디자인전문회사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 7 장 참여제한 및 환수

1. 제재등급 및 대상

- 가. 진흥원은 동 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각종 이행사항 위배, 중단, 실패 등에 대하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제재위원회(이하“제재위원회”라 한다 / 동 규정 제2장 제1항의 심의평가위원회 활용)의 심의를 거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, 협약 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익년도 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단, 진흥원의 장은 제재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- 나.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, 제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.

〈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기준〉

구분	세부내용	참여제한	환수범위
중단 · 포기	•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이행 하는 경우	1년	선정취소
	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도 포기 하는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사업기간 중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	-	전액환수
	•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·실패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수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·실패 할 경우	면제	면제
	•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-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-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	면제	면제
협약 위반	•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선정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협약서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이행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·유출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•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. 다만,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범위를 감경(완화)할 수 있음.	3년	전액환수
부당 수취	•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이상인 경우	영구	전액환수 및 고발고치
	•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인 경우	5년	전액환수 및 고발고치
	•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영구	전액환수 및 고발고치
보안 위반	• 보안관리,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	1년	-

※ 지원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, 환수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음

※ 지원기업(수혜자)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(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), 제13조(부당지원수혜자 제재)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2. 행정행위 등

가. 실패, 위반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,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수 종결된 것으로 같음한다.

나.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제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구성된

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8 장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

1. “참여기업”이 “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”에게 개발비용을 전액 납부한 경우 “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”는 본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디자인결과물은 “디자인전문회사”가 “참여기업”에게 무상으로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.
2. “디자인전문회사”는 본 디자인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“참여기업”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“참여기업”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9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

1. 진흥원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, 개발지원사업보고서를 게시하여 관련연구기관, 산업계, 학계 등에 널리 알릴 수 있다. 다만, 국가보안유지,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2. 인터넷을 활용하여 디자인개발 결과물(개발완료 후 3년, 상품화 후 1년 경과된 과제)을 공개하여 산업전반에 디자인 파급 및 기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. 단 특수한 기밀이 요구되거나, 지적재산권 측면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진흥원은 우수 과제 선정 및 개발지원사업에 의해 상품화된 제품 중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언론매체 등의 홍보를 통하여 판촉지원을 할 수 있다.
4. 진흥원 원장은 참여기업에게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10 장 추적평가

1. 진흥원은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2. 진흥원은 상기 1. 에 의한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디자인전문회사에게 기지원한 개발지원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때 디자인전문회사는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 11 장 포상

1. 진흥원은 관리운영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개발과제 디자인전문회사, 참여기업, 참여개발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2. 진흥원은 기술적,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과제의 개발책임자에게 개발사업 우수개발자 및 우수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신규 개발사업 선정시 우대 등의 특전을 취할 수 있다.

제 12 장 제재조치

1. 제7장의 “참여제한 및 환수”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(제작기업)가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흥원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개발지원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 13 장 기타

1.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“디자인개발지원사업”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, 아울러 디자인실명제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전반에 관한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<2025. 1. >

1. (시행일) 본 지침 개정안은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본 지침은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.